

농(임)업인 NH안전보험 | 무배당 |

농(임)업인의 농(임)작업 중
재해사고, 질병을
정부지원 받고!
걱정없이 든든하게!

정부지원
50%

-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임)업인 대상 보험상품**
- 성별, 연령별 구별없이 **단일 보험료**
-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보장 (**보험료의 50% 이상 정부지원**)



가입내용

보험기간/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정부지원자격
1년	1회납(연납)	만15세 ~ 84세	「농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경영체 미등록자 및 이중직업자는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일반형(개인형·2형), 부부형(1형·2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예시

기준: 개인형, 1구좌 가입기준, 단위: 원 / 부부형의 보험료는 개인형 보험료의 2배

주계약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일반 4형	일반 5형	산재 1형	산재 2형
기본형	보험료	96,000	112,200	127,500	145,100	97,600	159,600	180,700
	정부지원액	48,000	56,100	63,750	72,550	48,800	79,800	90,350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부(不)담보형	보험료	51,800	68,000	83,400	101,000	53,400	114,700	135,700
	정부지원액	25,900	34,000	41,700	50,500	26,700	57,350	67,850

※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상기 예시된 보험료의 5%를 할인 함(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됩니다)

※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에 대한 예시임

기준: 개인형 / 부부형의 보험료는 개인형 보험료의 2배

선택특약	지급사유	보험료	가입금액	지급금액
장제비지원특약(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11,500원	100만원	100만원
		34,500원	300만원	300만원
재해사망특약(무)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9,900원	1,000만원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무)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4,500원	1,000만원	1,000만원

※ 장제비지원특약(무)는 농업인만 가입 가능 ※ 선택특약 가입연령은 최대 87세까지 가능하며, 정부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음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상기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납입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에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구좌)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일반 4형	일반 5형	산재 1형	산재 2형
유족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5,500만원	7,500만원	9,000만원	12,000만원	7,500만원	12,000만원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 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5,000만원	7,500만원	9,000만원	10,000만원	7,500만원	10,000만원	12,0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7,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9,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0,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10,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간병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3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재활 (고도장해) 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재활 (재해장해)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특정질병 수술 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기본형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의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1형, 산재2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이 없으며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약관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알고계시나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
-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단, 고혈압제외)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1일 임금의 70% 정부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1일 최대 49,000원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